



진주교 서울대교구
구로3동 성당
주보성인 : 프란치스코 살레시오

08375 구로구 디지털로 27길 82 www.guro3cc.com
☎ 사무실 857-8541 팩스 857-8549

미사시간

주일

토요일 주일 : 19:00
06:30 (새벽) 10:30 (교중)
12:00 (중·고등부) 15:00 (유·초등부)
18:00 (청년) 21:00 (밤)
평일 06:30 (새벽), 19:00 (저녁), 목요일 10:00

예비자 교리 일요일 오전 09시 / 화요일 저녁 8시

유아세례 토요일 오전 11시 (사무실 문의)

연령회 회장 김인기 베드로 010-5311-7604/869-5965

모임

단체명	일시	장소
위령봉사회	5월 3일(일) 11:40	보스코홀
M.E.	5월 3일(일) 11:50	6교실
제대한화회	5월 6일(수) 11:00	6교실
우리어머니 Cu.	5월 10일(일) 11:40	강당
사도들의 모후 Cu.	5월 10일(일) 11:40	식당
구역장, 반장 모임	5월 13일(수) 20:00	식당

알림

- 살레시오 성소후원회 미사 5월 4일(월) 10:30
- 5월 5일(화) 어린이날 사무실 쉽니다.
- 5월 8일(금) 병자영성체는 구역별로 있습니다.

다음 주일(5/10) 청소 담당 : 9구역

영명축일 축하미사

- 일시 : 5월 7일(목)
- 축일이 5월이신 신자분들 대상으로 미사 때 안수 및 작은 선물 증정이 있습니다.

가톨릭 스테이지 안내

구로3동 성당 & 가톨릭 스튜디오와 함께하는
가톨릭 스테이지 (Catholic Stage)
온전한 하루 피정
“부활의 기쁨, 찬양의 은총”

- 2026년 5월 9일(토) 10:00~16:00 대성전
- 1부 강의 : 조남구 마르코 신부
(수원교구 공도 성당 주임)
- 2부 찬양콘서트 : 디이에스 워십 (Des Worship)
찬양팀
- 3부 음악 피정 : 이창민 마르치아노 신부
- 파견미사 : 이창민 마르치아노 신부
- 준비물 : 미사도구(미사예물, 봉헌금)
김밥판매(중식)
- 문의: 성당사무실(857-8541)

중장년분과 성지순례 참여자 모집

- 대상 : 중장년이면 누구나 가능
- 일시 : 5월 16일(토) 오전7시 집결
- 장소 : 배론 성지(충북 제천)
- 회비 : 2만원(식대 포함)
- 신청 및 문의 : 김재호 다두 (010-9329-9586)

2026년 청소년과 함께하는 성모의 밤

- 일시 : 5월 25일 (월) 17시30분 ~ 19시 대성전
- 대상 : 전 신자
- ※ 성전 입구 전시회 관람, 음료, 간식나눔이 있습니다.

성모님에 관한 작품 공모

- 대상 : 전 신자
- 작품내용 : 그림, 시, 수필, 편지 등
- 제출기한 : 5월 24일(일)
- 기재사항 : 구역/반/이름
- 접수 : 본당 사무실
- 작품 제출해주신 모든 분께 소정의 상품 증정 -

우리들의 정성(4월 22일 ~ 4월 28일)

교무금	7,754,000원
주일헌금	현금 4,504,000원 신자엽 28,000원
2차헌금	2,334,000원
감사헌금	꿀벌유치원4만원 황정후5만원 모경숙2만원 공용숙10만원 박홍민10만원 박승윤20만원 최미희 5만원 정영자 1만원 이석구10만원

교중미사 전례봉사자 명단

월 일	해 설	복 사		독 서	
5/3	이인옥	김영균	이치현	안상록	송시영
5/10	구민서	신종구	정재호	하재민	정연희

성체 분배자 명단

월 일	토요주일	06:30	10:30	
5/3	조홍환	도현만	하재민	옥윤필
5/10	최웅조	박용환	김영균	조홍환

성가번호 ♪ 입당 : 139 ♪ 예물준비 : 210, 211 ♪ 영성체 : 496, 498 ♪ 파견 : 134

화답송 
주님 저 희가당 신께 바-라-는 그대 로자-애를 베푸소 서

교무금 입금 계좌번호 : 우리은행 129-05-001894 예금주 :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
(※ 입금인은 교무금 책정자 이름으로 적어 주세요.)

제 3 편 사 목

제 1 장 교 구

제 2 절 사법부

제 2 관 법원의 구성

제 152 조 (교구장)

교구장은 법률로써 명백하게 제외되지 않은 모든 소송에 관하여 자기 교구법원에서 제1심의 재판관이 된다(교회법 제1419조 참조).

제 153 조 (사법대리)

교구장은 총대리와 구별되는 사법대리 즉 법원장을 임명하여야 한다. 이 사법대리는 덕망이 있고 교회법의 박사나 적어도 석사학위를 가진 30세 이상의 사제이어야 하며 교구장과 더불어 한 법원을 구성한다(교회법 제1420조 참조).

제 154 조 (재판관)

교구장은 사법대리 이외에 덕망이 있고 교회법의 박사나 적어도 석사학위를 가진 성직자나 평신도를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(교회법 제1421조 3항 참조).

제 155 조 (검찰관과 성사보호관)

1항 교구장은 덕망이 있고 교회법의 박사나 적어도 석사 학위를 가진 검찰관과 성사보호관을 임명하여야 한다(교회법 제1435조 참조).

2항 이 두 직책은 한 사람이 겸임할 수도 있다(교회법 제1436조 참조).

제 156 조 (변호인과 소송대리인)

1항 소송 당사자는 자기를 위한 변호인과 소송대리인을 자유로이 선임할 수 있다(교회법 제1481조 1항 참조).

2항 변호인과 소송대리인은 소송 당사자의 본당 사목구 주임이 맡을 수도 있다.

제 157 조 (공증관)

공증관은 소송 절차마다 참여하여야 하며 소송 기록에 서명하여야 한다(교회법 제1437조 참조).